

4.3.13 졸업종합시험규정

제정 1999. 11. 01.
개정 2006. 10. 19.
개정 2012. 01. 30.
개정 2015. 11. 17.
개정 2016. 11. 15.
개정 2021. 06. 02.
개정 2022. 12. 07.
개정 2024. 04.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내규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1.06.02.>

제2조(시험의 종류) ①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작품 및 능력테스트)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해외대학으로 파견된 교환학생은 해당 파견대학 졸업요건 충족시 본교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30.>

③ 학과에 따라 졸업종합시험을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012.1.30. 항 번호 변경>

④ 시험의 종류는 학과별로 시험의 종류(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작품 및 능력테스트), 실습보고서)를 2가지 이하로 선정하되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07.>

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중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학과 졸업종합시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07.>

제3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과 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3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② 단, 각 학과 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한 경우 학년 및 학점 제한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시행시기) ① 시험은 매년 2회 학기별 12주차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② 각 학과에서는 시험의 실시 30일전에 시험일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기타 종합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5조(시험과목 및 배점) ① 시험과목은 학부(과)별로 4개 교과목 이상의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특성에 맞게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작품 및 능력테스트)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1.17.>

③ 교과목별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

제6조(시험합격기준) ① 시험과목은 각 교과목 득점이 40점 이상인 동시에 전체 총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1개 교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합격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불합격된 자의 시험성적은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취득한 교과에 한하여 과목별 합격

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② 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 이후 계속 전과목 재시험 또는 과목별 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제8조(졸업시험 관리위원회) 졸업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시험실시 계획
2. 시험교과목, 시험시기 및 시험출제, 채점기준 및 방법, 시험평가
3. 합격사정 기준과 합격자 결정
4. 시험에 관한 기타 사항

제9조(졸업논문 등) ① 제2조, 제3조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논문(이하 “논문”) 및 실험·실습 보고서를 제출할 자는 논문 작성 계획서를 졸업이 가능한 학기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작성 계획서의 내용에는 논문의 주제, 목차, 참고문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과장은 논문작성 계획서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2주 이내에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논문작성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선정, 자료수집, 이론전개, 논문작성 요령 등을 지도한다.

⑤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의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해 작성,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논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어로 된 논문은 국문 요약문을 첨부해야 한다.

1. 표지
2. 목차
3. 논문내용
4. 참고문헌
5.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경상, 사회, 인문 계열은 60매 이상, 이공계열은 20매 이상으로 한다.
6. 실기발표는 주제당 1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논문등의 제출) ① 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는 졸업이 가능한 학기의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기발표의 경우에는 해당작품과 작품을 제작한 전과정에 대한 레포트를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작성 방법 및 체제는 본 대학교의 논문작성 체제에 따르며 지정된 원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등의 심사) ① 논문등의 심사는 2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되 논문 지도교수 및 실기발표 지도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논문등의 평가는 A, B, C로 불합격된 논문은 F로 판정하여 합격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P로 등재하고 반드시 발표 또는 전시되어야 한다.

제12조(종합시험등의 유효기간) 종합시험의 유효기간은 시험에 합격한 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이며, 불합격된 자에게는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1.06.02.>

제13조(자격박탈) 종합시험 등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졸업을 유보한다.

1. 졸업시험 :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2. 졸업논문 및 실험실습 보고서 : 타인의 졸업논문을 원안과 같이 복사하거나 각주 없이 논문내용을 모방하였을 때
3. 실기발표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였을 때

제14조(졸업논문의 보존) 심사를 거치고 소정의 절차가 끝난 논문(실기발표 포함)은 학교에서 보관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졸업종합시험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졸업종합시험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학기에 시행되는 졸업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졸업종합시험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